

'15. 2월 설 명절 맞이 청렴주의보 발령

<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>

◇ '청렴주의보' 란 ?

- 명절 연말연시 등 주요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패·청렴 위해요소를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·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을 도모

□ 청렴주의보 발령



- 발령내용 : '설 명절 직무관련 금품 수수' 주의
- 발령기간 : '15. 2. 9(월) ~ 2. 27(금)
- 위반조항 :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(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), 제14조의2(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)
- 위반시 징계기준

구 분		100만원 미만	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	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	500만원 이상
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, 부당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(금품향응수수 후 직무 관련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)	수동	감봉	정직·강등	해임	파면
	능동	정직	강등·해임	해임·파면	파면
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, 부당처분을 한 경우 (금품향응수수 후 직무 관련 편의 등을 제공한 경우)	수동	정직·강등	해임	파면	
	능동	강등·해임	해임·파면	파면	

○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처리 절차

- ①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
- ② 멸실·부패·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(운영지원과장)에게 인도
- ③ 행동강령 책임관은 폐기처분, 불우이웃돕기시설 기증, 홈페이지 공고, 매각 등 처리하고 기록·관리

◇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(국민권익위 예시)

-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
- 통상적인 관례*의 범위(3만원 이내)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
 - * 지도·감독 대상사업체 방문 시 제공되는 음료 등
 - * 장시간의 업무협약 도중에 간소한 식사를 하는 경우
 - *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등
-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·숙박 또는 음식물 (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무원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금지)
-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
 -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되어 있는 등 통상적인 증정용으로 사용되는 기념품
 - 세미나 및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홍보용 물품

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상담 및 신고처 〉

○ 운영지원과 감사업무 담당

(☎ 02-2110-1347, FAX 02-2110-0130, 업무용 포탈내 청렴플러스의 비리신고 이용)